



FTA-PASS

소식지



December.2017

VOL.60

커버스토리

NEWS

유용한 정보

FTA STUDY

업데이트



CONTENTS

NEWS

다시보는 2017년 하반기 FTA-PASS 사용자 간담회

유용한 정보

2018년 FTA-PASS 현장지원 안내

FTA STUDY

세번변경기준

업데이트

서류관리 목록에서 원산지 증명서류 출력 지원



FTA-PASS

소식지



December.2017

VOL.60

커버스토리

NEWS

유용한 정보

FTA STUDY

업데이트



2017년 하반기 FTA-PASS 사용자 간담회

기업 실무자분들과 함께한 FTA-PASS 사용자간담회에서는 현장에서 느끼는 원산지관리의 애로사항을 듣고, 더 나은 원산지관리시스템으로 발전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었습니다.



[기능개선]

- 제품(수출물품)원가산출내역서 관리기능 추가
- 원재료의 역내 · 외산 정보 및 확인서 수취여부 표기기능 개선
- 근거서류 정보(원재료 세번 및 결정기준) 오류 확인기능 개선

[제안사항]

- FTA-PASS 시스템에 대한 영문 설명자료 제작요청
- 원산지 판정 후 원산지소명서 및 자재명세서 출력 가능토록 개선 요청
- 간편한 표준 BOM 등록 기능 요청

[기타의견]

- 세관의 활용지원 및 검증컨설팅 활용 당부
- 검증사례 및 대응노하우, 효율적인 원산지관리 방법 등의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플랫폼 구축 필요

상기 이외에도 여러 가지
유용한 제안들이 논의되었습니다.

**참가해 주신 실무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FTA-PASS

소식지



December.2017

VOL.60

커버스토리

NEWS

유용한 정보

FTA STUDY

업데이트



2018년 FTA-PASS 현장지원 안내



현장지원 개요

- 지원대상 : FTA-PASS 사용기업
- 지원범위 : FTA-PASS 사용관련 애로사항 해소, 협력사 교육지원
※ 입력양식 작성방법, 원산지 판정, 서류발급 등 FTA-PASS 애로사항 해결
- 지원방법 : 관할지역별 FTA이행지원센터에서 기업현장을 방문하여 무료로 지원
- 소요시간 : 2 ~ 3시간

신청기간 및 방법

- 신청기간 : 2018.1.1 ~ 11.30
- 접수방법 : FTA-PASS 홈페이지에서 접수
- 신청메뉴 : 홈페이지 > 기업지원 > 현장지원 > 신청하기 > 저장
- 방문일시 : 별도협의

지원 비용

- 전액무료

문의사항 및 안내

- 안내전화 : 1544-0645

현장지원 프로세스



① 신청서 접수

- 사이트 접속 (ftapass.or.kr)
- [기업지원>현장지원] 신청서 작성



② 사전준비

- 방문일정 협의
- 등록자료 작성 (FTA-PASS 엑셀양식)



③ 현장방문

- 신청기업 직접방문
- 준비자료 검토
- FTA-PASS 적용
- 사후관리안내



FTA-PASS

소식지



December.2017

VOL.60

커버스토리

NEWS

유용한 정보

FTA STUDY

업데이트

원산지규정 품목별기준 세번변경기준

물품의 원산지를 결정하는 품목별기준은 세번변경기준, 부가가치기준, 가공공정기준으로 구분됩니다. 세번변경기준은 생산에 투입된 비원산지재료의 세번과 다른 세번의 제품이 생산되면 해당 상품을 원산지 물품으로 인정하는 기준입니다.

4단위(호)
HS코드: 7318.15
2단위(류)
6단위(소호)

HS 2단위 변경기준(CC)

다른 류에 해당하는 원재료로부터 생산된 제품을 원산지 물품으로 인정

HS 4단위 변경기준(CTH)

다른 호에 해당하는 원재료로부터 생산된 제품을 원산지 물품으로 인정

HS 6단위 변경기준(CTSH)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원재료로부터 생산된 제품을 원산지 물품으로 인정

※ 세번변경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비원산지 재료가 생산되는 제품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미미한 경우에는 최소허용기준의 특례규정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한-미FTA에 대하여
완제품 온도센서는
원산지결정기준을
충족할까요?

※온도센서는 한국에서 생산되고,
한-미FTA의 원산지결정기준은 CTH이다.

온도센서 구성내역

구분	물품명	원산지	HS코드	CTH 변경여부
완제품	온도센서	?	9025.90	-
원재료	측정센서	불명	9025.90	아니오
	스텐레스 봉	불명	7326.90	예
	케이블	불명	8544.49	예
	파워카드	불명	8544.42	예
	수축튜브	불명	3917.32	예
	센서핸들	불명	3926.90	예

CTH 모든 원재료와 완제품의
HS4단위 변경되어야 충족!!!
이 때, 완제품과 세번이 같은
“측정센서”의 경우,

원산지를 입증하기 위한
*근거서류를 첨부 시,

온도센서는 ‘한국(KR)’의 원산지
지위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근거서류

원산지확인서

원산지증명서



FTA-PASS

소식지



December.2017

VOL.60

커버스토리

NEWS

유용한 정보

FTA STUDY

업데이트



저희 회사는 온도센서를 생산하여 미국으로 수출하고 있습니다. 온도센서는 한-미FTA의 원산지결정기준인 세번변경기준을 충족하기 때문에 '한국(KR)'의 원산지 지위를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FTA-PASS를 이용하여 온도센서의 원산지를 판정했을 때 '불충족'으로 판정되었습니다. 세번변경기준이 '불충족'이 된 현상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나요?



아래의 단계에 따라 '불충족' 판정 사유를 확인하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STEP 1

판정이력 확인

[판정관리 > 판정이력] 메뉴의 FTA 협정별 판정이력에서 완제품에 투입된 비원산지 재료 중 세번이 등록되지 않은 원재료 찾기

STEP 2

세번 등록 여부 확인

(STEP1)에서 찾은 비원산지 재료의 세번이 [기준정보 > HS코드] 메뉴에 등록되어 있는지 확인

판정대상	판정대상명	판정대상명	판정대상명	판정대상명	판정대상명
완제품	A-000	세번	902590	판정대상명	판정대상명
판정대상명	판정대상명	판정대상명	판정대상명	판정대상명	판정대상명
판정대상명	판정대상명	판정대상명	판정대상명	판정대상명	판정대상명
판정대상명	판정대상명	판정대상명	판정대상명	판정대상명	판정대상명

판정된 FTA 협정에 알맞은 HS코드 정보 등록

STEP 3

✓ 세번이 등록된 경우

등록된 원재료의 HS코드 정보의 적용협정, 국가, HS기준년도를 판정된 FTA 협정에 알맞게 수정

✓ 세번이 등록되지 않은 경우

판정된 FTA 협정에 알맞은 HS코드 정보 등록



FTA-PASS

소식지



December.2017

VOL.60

커버스토리

NEWS

유용한 정보

FTA STUDY

업데이트

서류관리 목록에서 원산지 증명서류 출력 지원

원산지증명서류 출력을 발급목록에서 곧바로 출력할 수 있도록 기능을 개선하였습니다.

원산지증명서류를 목록에서 바로 출력하여 편의성을 향상하였습니다~!!

- [서류관리 > FTA증명서(자율) / 원산지확인서 / 국내제조확인서]의 발급목록에서 [출력] 버튼을 클릭

※ [대상] 자율발급 FTA원산지증명서, 원산지확인서, 국내제조확인서



■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 <개정 2016.7.1>

원산지(포괄)확인서(Declaration of Origin)

(2쪽 중 제1쪽)

1. 발급번호 (Reference No.) : CON-csa44-9 [※ 고객사발급번호 : 20170700COMPANY000001]	
2. 공급하는 자 (Supplier)	상호(Company Name) : (재)국제원산지정보원 대표자성명(Name of Representative) : 김기영 주소(Address)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아람로205번길 8, 5층 (아람동) 전자우편주소(E-mail) : fta-pass@origin.or.kr
3. 공급받는 자 (Supplied to)	상호(Company Name) : 사업자등록번호(Business Registration No.) 211-82-16919 대표자성명(Name of Representative) : 백두전사 주소(Address) :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16 전자우편주소(E-mail) : baekdoo@baekdoo.com

공급물품 명세서(Good Statements)

4. 연번 (S/N)	5. 자유무역 협정명칭 (Name of FTA)	6. 품목번호 (HS No.)	7. 품명·규격 (Description·Specification of Good(s))	8. 수량 및 단위 (Quantity & Unit)	9. 원산지 결정기준 (Origin Criterion)	10. 원산지 충족 여부 (Fulfillment of Origin Criterion)	11. 원산지 증명기간 (Blanket period of Origin)	12. 원산지표시확인기간 (Blanket period of Origin)
1	한-EFTA	852580	CCTV 카메라 4채널 / 4 채널	C 111X	(√) ()	KR	2017/07/01-2018/06/30	
	한-EFTA	852580		CTH	(√) ()	KR	2017/07/01-2018/06/30	
	한-EU	852580		HC 50Z	() (√)	불명	2017/07/01-2018/06/30	
	한-뉴질랜드	852580		CTH	(√) ()	KR	2017/07/01-2018/06/30	
	한-미국	852580		CTSH	(√) ()	KR	2017/07/01-2018/06/30	
	한-베트남	852580		CTH	(√) ()	KR	2017/07/01-2018/06/30	
	한-싱가포르	852580		CTH	() (√)	불명	2017/07/01-2018/06/30	
	한-아세안	852580		CTH	(√) ()	KR	2017/07/01-2018/06/30	
	한-인도	852580		CTSH+BD 35Z	() (√)	불명	2017/07/01-2018/06/30	

- 다음 페이지에 계속 -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원산지를 확인합니다.

The undersigned hereby declares the origin of the good(s) in accordance with Article 12.1 of the 'Enforcement Rules of Act on Special Cases of the Customs Act for the Implementation of Free Trade Agreements.'

작 성 자(Declarer) : 임상숙 (서명인인, Signatory)
 직 위(Title) : 팀장
 상호 및 주소(Company Name/Address) : (재)국제원산지정보원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아람로205번길 8, 5층 (아람동)
 작 성 일(Date) : 2017년 07월 27일 (YYYY/MM/DD)

210mm × 297mm [복사지 80g/㎡(재활용품)]